

1.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발의일자 : 2008년 2월 12일
- 발 의 자 : 이재술 의원(찬성의원 11인)
- 회부일자 : 2008년 2월 12일
- 상정 및 의결
 - 제1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008년 2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 용역을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용역, 기술용역 으로 규정하고(안 제2조)
- 시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안 제3조)
- 용역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 심의회는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필요성·타당성과 용역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함(안 제6조)
- 용역심의 대상은 용역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5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으로 하되,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사업, 전액 국고보조 용역사업, 관련 법령에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은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안 제8조)
- 심의회는 용역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시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시장은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일정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용역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12조)
- 시장은 대구시가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 용역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우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 시장은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과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 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사와 용역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용역을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용역, 기술용역 으로 규정하고(안 제2조)
 - 시장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3조)
 - 용역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용역심의위원회”를 두고(안 제4조)
 - 심의회는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필요성·타당성과 용역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6조).

- 용역심의 대상은 용역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5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으로 하되,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사업, 전액 국고보조 용역사업, 관련 법령에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은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며(안 제8조)
- 용역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 시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9조)
- 시장은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일정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용역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2조)
- 시장은 대구시가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 용역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우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13조, 제14조)
-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과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음.(안 제15조)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대구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적격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유사 또는 중복 용역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용역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대구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용역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이 2005년에는 97건에 91억원, 2006년에는 101건에 92억원, 2007년에는 138건에 136억원으로 매년 용역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학술용역은 2005년에 비해 건수는 56% 금액은 112% 증가하였으며, 기술용역은 건수는 35%, 금액은 19%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 계획단계에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후
 -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고
 - 시의회 예산심의회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 발주된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과
 - 용역완료 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향후 용역사업 시행에 반영하는 한편,
 - 용역계약,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중복·유사용역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사업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용역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
- 다만, 안 제3조의 용역 사전심의를 위한 심의내용과 절차, 안 제12조의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내용과 절차, 안 제13조의 용역 평가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행규칙으로 그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면 행정위주의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 심의회회는 민간인 5명이상이 포함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행정중심적인 심의를 제한하고 있음
○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액 국비 용역은?	○ 첨단미래도시 용역이 있었음
○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에 대한 심의기능은?	○ 사전 심의에는 제외되지만 사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 이번 조례가 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 용역의 중복, 유사성을 방지하고 용역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높일 것임.

5. 토론사항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전원찬성)